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49
----------	-------

발의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강은미 · 심상정 · 이은주
강민정 · 배진교 · 장혜영
윤후덕 · 윤미향 · 류호정
고영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물품 및 용역 등의 공급에서 높은 독과점가격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점포를 임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임대 계약기간과 가맹사업 계약기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가맹계약 및 갱신 등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

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
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
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
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
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3조제3항 중 “거절 사유를 적어”를 “거절 사유와 그 입증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등 거절 사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맹계약기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p> <p>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② (생략)</p> <p>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p>	<p>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p> <p>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신설>

-----거절
사유와 그 입증자료를-----
-----. 이 경우 가
맹점사업자의 귀책 등 거절 사
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가맹계약기간) 가맹본
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다
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